

|      |                    |     |                   |
|------|--------------------|-----|-------------------|
| 제공일자 | 2008. 4. 22.(화)    | 담당자 |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 홍보담당 | 변 철 성 선임(368-4414) | 연락처 | 02-368-4431 총 2 매 |

## 제 목 :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의 최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중심의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IBR 를 발간(2008.4.21)하였다.

###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중심의 노후소득 대체기능 강화 절실 - 근로자 퇴직연금 실질소득대체율 12.6%, 노후소득 보장효과 미흡 -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등 OECD 주요국은 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저출산 심화 등으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거나 공적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적용제외 등을 통해, 퇴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는 반면, 시장기능의 원리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20%~3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12.6% 수준(개인연금 15.7%)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고령화 대응차원에서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보다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결과

| 시나리오                                                |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br>(55 세 수급개시, 은퇴기간까지 수급) |                      |                            |                      |                      |
|-----------------------------------------------------|---------------------------------------|----------------------|----------------------------|----------------------|----------------------|
|                                                     | 20 년                                  | 25 년                 | 28 년                       | 30 년                 | 35 년                 |
| 시나리오 I (비관)<br>- 임금상승률 : 3.70%<br>- 운용수익률 : 2.79%   | 10.4%<br>(416,858)                    | 10.8%<br>(520,526)   | 11.1%<br>(594,329)         | 11.3%<br>(649,079)   | 11.7%<br>(808,277)   |
| 시나리오 II (현재)<br>- 임금상승률 : 4.70%<br>- 운용수익률 : 3.79%  | 11.5%<br>(553,833)                    | 12.2%<br>(739,204)   | <b>12.6%<br/>(877,913)</b> | 12.9%<br>(984,055)   | 13.6%<br>(1,306,669) |
| 시나리오 III (낙관)<br>- 임금상승률 : 5.70%<br>- 운용수익률 : 4.79% | 12.7%<br>(731,630)                    | 13.7%<br>(1,041,434) | 14.3%<br>(1,284,625)       | 14.7%<br>(1,476,345) | 15.7%<br>(2,084,548) |

주: 1) ( )은 은퇴후 월 퇴직연금액을 의미하며 단위는 원

2) 가입기간 만기후 퇴직전 개인연금자산총액(기여금수익총액)을 은퇴기간(24년간) 일정수준의 연금

으로 환산한 공식은 
$$\frac{\text{개인연금자산총액}}{\frac{1 - (1+r)^{-n}}{r}}$$
 이 사용됨 (r:운용수익률, n: 기대여명)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노후소득보장과 사적연금의 기능강화차원에서 장단기적인 노후소득보장 구축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먼저

단기적으로는 퇴직 및 개인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전환대책 마련, 개인연금제 보완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퇴직연금 전환대책으로는 연금세제 혜택확대, 근로자 수급권보호장치 정비, 연금가입의 의무화 검토, 중간정산제폐지 등이, 개인연금제도 보완측면에서는 개인연금 자산운용방법의 다양화, 개인연금이전제도의 보완, 개인연금 세제의 정비 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장기적으로는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노동고용정책 변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연금제도의 틀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 등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과 관련된 노동정책의 변화를 통해 사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제고되도록 장기적 대책마련도 절실하다고 보았다.

\* 실질소득대체율 : 현재 우리나라 (표준)근로자가 근무하여 실현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평균근속기간 28 년, 은퇴기간 24 년 가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